研究論文

著作權法의 映像著作物에 관한 契約特例

玄 大 浩*

차 례

Ⅰ. 서 설
1. 문제의 제기
2. 영상저작물의 보호와 계약특례

Ⅱ. 저작물의 영상화와 계약의 해석
1. 영상화란?
2. 영상화계약의 해석

Ⅲ. 영상저작물의 귀속과 계약의 보완
1. 개 관
2. 영상저작물 참여자의 권리관계
3. 영상제작자의 보호
4. 왜곡에 대한 보호 및 성명표시

Ⅳ. 맺음말

* 韓國法制硏究院 副硏究委員, 法學博士

Ⅰ. 서 설

1. 문제의 제기

인터넷과 정보시스템의 발달은 콘텐츠의 이용 및 유통 등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관련산업의 급성장을 가져오고 있다.[1] 특히 영상저작물(또는 영상콘텐츠)은 이용 및 유통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영상저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저작권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우리 나라의 경우 영상저작물의 이용 및 유통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영상진흥기본법'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은 일반저작물처럼 저작권법상의 보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침해시에 일반저작물과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렇지만 영상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달리 하나의 저작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저작물의 복합물이고 다수인의 공동작업으로 창작되는 새로운 창작물에 해당된다. 이렇다보니 영상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구별되는 여러 특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영상저작물의 제작에는 많은 개별저작물이 이용된다. 예컨대, 스토리가 되는 시나리오의 원작, 음향의 기초가 되는 음악저작물, 배경이 되는 미술저작물 등이 이용되므로 이들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창작된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상의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둘째, 영상저작물의 제작과정에는 개별저작물의 저작자들 외에도 배우, 음향·무대장치·조명·녹음·의상·촬영·편집 등의 전문가와 감독·연출자 및 영상제작자 등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은 종합저작물이자 공동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가 문제된다.

셋째,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기여한 많은 이해관계인들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가 문제된다.

---

1) 유럽에 있어서도 영상시장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팽창하여 왔고 장차에도 계속하여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영화산업도 지난 20년간 가장 많은 수의 영화를 제작하여 왔고 이 분야에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Pascal Kamina, Film Copyright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Press, 2002. p.1).

넷째,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른 저작물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도 문제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저작권법의 규율내용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 일반저작물과 구별되는 영상저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의 보충 내지는 보완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자사이의 계약에 대하여 별개의 장('제3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을 두고 있는데[2], 이 장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상저작물의 제작과정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해석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자사이의 권리관계를 밝히고 영상화계약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저작권법('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영상저작물의 보호와 계약특례

(1) 영상저작물의 개념 및 보호

영상저작물이라는 용어는 국가마다 달리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시청각저작물이라고 표현하고[3] 독일과 베른협약에서는 영상저작물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영화저작물이라고 한다.[4] 통상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

2) 유럽에서도 영상산업과 관련기술의 급성장에 불구하고 영상산업 분야에서 입법활동은 정지 내지는 이례적이었고, 회원국 차원에서는 주로 새로운 영상저작물에 관련하여 실연자와 제작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에 머물렀다(Pascal Kamina, op.cit., p.2).

3)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이란 저작물이 수록되어 있는 필름이나 테이프와 같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물(物)과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영사기(projector), 확대투사기(viewer) 또는 전자장치와 같은 기계 혹은 장치의 사용에 의하여 보여지도록 하는 일련의 관련 영상(image)으로 구성된 저작물이다』고 정의하고 있고(17 U.S.C. §101), 이 개념의 하위개념으로 『"영화(motion pictures)"란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일련의 영상으로 구성되고 소리를 수반하는 시청각저작물이다』라고 한다(17 U.S.C. §101).

4) 일본의 경우에는 영화저작물이란 영화의 효과에 유사한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또한 물건에 고정되어 있는 저작물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일본의 저작권법 제2조제3항).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5]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되는 동시에 기존저작물의 2차적인 창작물에 해당되어 2차적 저작물로도 보호된다.[6] 그러므로 영상물이 저작권법 제4조의 영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 저작권법의 보호요건인 독창성(originality)과 유형적인 매체에 고정성(fixation)을 갖추어야 하며 연속적인 영상으로 재생하여 보거나 볼 수 있어야 한다.

⑵ 계약특례에 관한 입법

1) 독 일

독일의 저작권법은 '영상물에 대한 특별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영상저작물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속영상으로 구분한다.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독일의 저작권법은 제88조 내지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화의 권한과 관련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타인에게 허락한 경우에 그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며 아울러 영상저작물 및 번역물과 기타 개작물을 알려진 모든 이용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포함한다.[7] 그렇지만 이 경우 저작물을 다시 영상화하는 권한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계약체결 후 10년이 경과된 후에 자신의 저작물을 별도의 영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권한은 저작자가 가진다.[8]

둘째,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계약이 불분명하다면,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 번역물 및 기타 개작물을 알려진 모든 이용방법으로 이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9] 이 경우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이미 제3자에게 이들 이용권을 부여하였다면 영상저작자는 계속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제한하거나 또는

---

5) 저작권법 제2조제10호
6) 저작권법 제5조제1항
7) 독일의 저작권법 제88조제1항
8) 독일의 저작권법 제88조제2항
9) 독일의 저작권법 제89조제1항

제한없이 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10] 물론 소설·각본 및 영상음악과 같이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이용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11]

셋째, 실연자의 권한과 관련하여 영상제작자와 실연자사이에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불분명한 경우에 실연자는 녹음·녹화권, 복제·배포권, 공중전달권 및 실연방송권을 가지며,[12] 실연자가 제3자에게 이들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또는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하여도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련하여 이들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나 허락할 권한이 있다.[13] 형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실연자는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14]

넷째, 고전적 저작자, 근대적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은 저작물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나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저작자 상호간 및 영상제작자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해야 한다.[15]

2) 일 본

일본의 저작권법은 영화저작물의 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고 그 영화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으며,[16]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영화제작자에 대하여 당해 영화저작물의 제작에 참가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영화제작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17] 일본의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화저작자로부터 재산권을 영상제작자에 이전하는 이유는 첫째, 종래부터 영화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는 영화제작자와 저작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영화제작자의 권리행사에 맡겨져 있다는 실태, 둘째, 영화제작자가 자신의 위험 하에 거액의 제작비를 투자한다는 사실, 셋째, 다수의 저작자 모두에 저작권행사를 인정하면 영화의 원만한 이용을 저해하는 사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18]

---

10) 독일의 저작권법 제89조제2항
11) 독일의 저작권법 제89조제3항
12) 독일의 저작권법 제92조제1항
13) 독일의 저작권법 제92조제2항
14) 독일의 저작권법 제93조제2항
15) 독일의 저작권법 제93조제1항
16) 일본의 저작권법 제16조 참조
17) 일본의 저작권법 제29조제1항
18) 作花文雄, 著作權法, 發明協會, 2005. 85면 참조

일본의 경우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은 영화제작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지만, 오로지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써 제작하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중 (ⅰ)저작물을 방송할 권리 및 방송되는 저작물을 유선방송하거나 또는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 (ⅱ)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복제물에 의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할 권리는 영화제작자로서의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19] 또 오로지 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써 제작하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중 (ⅰ)저작물을 유선방송할 권리 및 유선방송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 (ⅱ)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에 의해 유선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할 권리는 영화제작자로서의 당해 유선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20]

3) 한 국

우리 나라도 영상저작물의 창작과정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986년에 독일의 저작권법을 모방하여 저작권법 제3장('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을 신설하였다. 저작권법 제3장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는 영상화에 대한 내용, 영상저작물의 귀속에 관련된 계약사항을 정한 것에 해당되며, 당사자사이의 합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경우에 보충 내지는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제74조는 고전적 저작자의 저작물(즉 소재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데,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화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일반이론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영상제작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 규정을 둔 것이다. 저작권법 제75조는 작성된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이 근대적 저작자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이 고전적 저작자에 관한 것이며 (고전적 저작자에게는 저작권법 제74조도 중요) 제3항이 실연자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76조의 제1항은 근대적 저작권자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은 실연자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8조의 2는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

19) 일본의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20) 일본의 저작권법 제29조제3항

Ⅱ. 저작물의 영상화와 계약의 해석

1. 영상화란?

영상저작물의 작성에는 기존저작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풍경영화나 기록영화 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저작물을 이용한다. 이와 같이 기존저작물을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이용하는 것을 영상화(Verfilmung)라고 하는데, 소설·각본 등의 어문저작물은 물론이고 미술저작물과 음악저작물도 가능하다.[21] 영상화를 허락할 수 있는 자는 저작재산권자이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기존저작물을 영상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은 경제적 이용에 관한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자가 영상화를 허락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통상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22] 따라서 영상화권도 일종의 이용권에 해당되어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는 원래 자기의 저작물을 복제, 출판, 연주, 상영 등에 의하여 이용하는 권리와 함께 그 번역,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한 형태이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하고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상화권은 기존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영상저작물이라고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영상저작물 제작의 준비단계로서 저작물을 영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계약에 의해서 '영상화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 계약을 총칭하여 '영상화계약(Verfilmungsvertrag)'이라 한다. 영상화계약은 기존저작물을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이용하는 계약으로 보통 영상저작물의 제작자와 소재저작물의 저작자사이에 체결한다. 따라서 이미 완성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Filmlizenvertrag 또는 Filmbestellvertag)과 구별된다.[23] 영상화계약은 기존저작물의 영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성을 지닌 이용권의 양도계약에 해당되고, 영상화계약의 법적 특성은 저작권법의

---

21) 최현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상), 계간 저작권(1992년 봄호), 62면; 박원형, 영상저작물의 이용과 귀속, 계간저작권(1988년 여름호), 69면.

22) 저작권법 제42조제3항

23) 최현호, 위의 논문, 65면.

독자적인 이용허락계약의 일종에 속하며, 민법의 도급계약[24] 등이 적용되어 보충된다.[25]

2. 영상화계약의 해석

(1) 이용허락의 허여

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이용허락은 당사자가 정한 명시적 합의조건과 묵시적 합의조건에 따라 그 허락의 유형과 범위가 결정된다. 이용허락의 허여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계약상의 권리는 계약체결시 요구되는 이용허락자의 통제 내에 있었던 저작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즉 명시적 합의에 따라서 이용허락의 유형과 범위가 결정되는데, 그러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이용허락에 의한 묵시적 권리는 계약당시에 이용허락자의 통제 내에 있는 권리에만 적용된다.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조건은 영상화권과 상거래의 맥락에 비추어 계약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즉 “매체를 이용할 모든 권리”, “모든 매체에 현재 알려진 또는 장래 개발될 모든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의 허여는 현재나 장래 개발될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허여시에 예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현재나 장래 창설될 모든 권리, 이용, 미디어, 배포방법 및 전시방법을 포함한다. 우리 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허락과 관련해서 음반제작계약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시디(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도 있다.[26]

---

24) 우리 나라의 대법원은『영상물 제작공급계약상 수급인의 채무가 도급인과 협력하여 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영상물을 제작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의 협력 없이는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채무이고, 한편 그 계약의 성질상 수급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인 사안에서 도급인의 영상물제작에 대한 협력의 거부로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성의껏 제작하여 납품한 영상물이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기한 내에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할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케 된 경우, 이는 계약상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약정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영상화계약을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수급인의 협력의무를 인정한다(대판 1996. 7. 9. [96다14364, 14371]).

25) Horst von Hartlieb, Handbuch des Film-, Fernseh- und Viedeorechts,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1991. S.307 참조.

26)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새로운 매체로부터 발생

⑵ 이용허락의 유형

기존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이용허락과 관련해서는 배타적(또는 독점적)인 이용허락[27]을 허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즉 저작권법은 제74조제1항에서 영상화에 따라 영상제작자가 가지는 권한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당해 영상화권의 특성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용허락의 성격이 '배타적'인지 또는 '비배타적'인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은, ①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경우인지 여부,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 받았다고 보여지는 경우로서 저작자의 보호와 공평의 견지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저작자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등 당사자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식, 경험, 경제적 지위,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고려하고, ②이용허락계약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계약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체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어떠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등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른 계약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석의 필요성을 참작하며, ③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만일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인지 여부,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와 사용, 소비 방법에 있어 유사하여 기존 매체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안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판 1996. 7. 30. [95다29130]).

27) 이용허락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조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배타적 이용허락과 비배타적 이용허락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비배타적 이용허락(nonexclusive license)이란 이용허락자가 동일한 범위에서 동일한 계약상의 권리를 제3의 이용허락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 이용허락을 의미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용허락이용자가 제3자에게 독자적으로 이용허락을 수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村上政博, 特許ライセシスの日米比較(第3版), 弘文堂, 2000. 128면). 다음으로, 배타적 이용허락이란 이용허락자가 이용허락이용자 이외의 제3자에 이용허락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村上政博, 위의 책, 127면).

있어서 그 해석이 문제된다. 저작권법 제74조제2항은 영상화권이 배타적인지 또는 비배타적인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두고 있어서 당사자가 계약상 배타적 특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영상화권은 비배타적인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28]

그렇지만 영상저작물 제작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타적 이용허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쟁자의 출현으로 투하자본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투하자본 회수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전적 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사이에 영상화계약에서 배타적 영상화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하여도 영상화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원에 의한 보충해석(일종의 입법행위)을 통하여 영상화계약에 의한 이용허락을 배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독일의 저작권법은 영상화허락을 배타적 이용허락으로 명시하고 있음).

⑶ 이용허락의 조건

기존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허락은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른 방법의 이용은 계약위반이 된다. 이와 같은 명시적 제한 이외에 묵시적 제한을 담고 있는 이용허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상제작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묵시적 제한이 법에 의하여 허용된 공정한 이용에 관련된 경우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허용된다. 예컨대,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TV용 영상화 허락을 받은 영상제작자 등이 완성된 영상저작물을 TV로 재방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에서 상영하거나 비디오 테이프나 비디오 디스크로 만든 경우에 영상화 허락을 한 저작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러한 사용료 청구권을 영상화계약에서 유보하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없을 경우가 문제된다. 예컨대,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은 방송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디오 테이프나 비디오 디스크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방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영상저작물은 방송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영화관 상영중 영상저작물을 TV에 방영할 수 없다.

---

28) 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이용허락을 배타적인 이용허락으로 해석하는 견해(장인숙, 저작권법 원론, 보진재, 1996. 232면;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 개설, 세창출판사, 2005. 243면; 오승종・이행완, 박영사, 2005. 453면 참조)가 다수설에 해당된다.

⑷ 이용허락의 기간

당사자가 이용허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이용허락은 존속한다. 당사자가 이용허락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허락 된 객체와 상거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존속한다.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상화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다면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제3자에게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29] 독일의 경우 저작권법 제88조제2항에서 『저작자는 의심스러운 경우에 계약 체결 후 10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별도의 영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0]

Ⅲ. 영상저작물의 귀속과 계약의 보완

1. 개 관

영상저작물은 통상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여 제작되고, 이들 참여자들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이른바 고전적 저작자(classical authors)·근대적 저작자(modern authors) 영상제작자 및 실연자(perfomer)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이들 참여자사이에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된다. 예컨대, 영상화에 관한 허락에 어떠한 권한이 포함되는지, 영상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그 저작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자들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문제는 근본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 해당된다.

2. 영상저작물 참여자의 권리관계

⑴ 고전적 저작자와의 권리관계

1) 고전적 자작자란?

고전적 저작자란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자기의 기존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즉 소설가, 방송작가, 시나리오작가, 미술저작물의 저작자, 음악저작

29) 저작권법 제74조제2항
30) 독일의 저작권법 제88조제2항 참조.

물의 저작자 등을 말한다. 고전적 저작자의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소재 내지 자료로 이용된다는 의미에서 그 저작물을 소재저작물(Stoffwerk)이라고 하고, 그 저작자를 소재저작물의 저작자(Stoffwerkauthor)라고도 한다. 고전적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고전적 저작자가 기존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도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31]

2) 영상화권의 내용

그런데, 고전적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영상화를 허락하는 영상화계약을 영상제작자와 체결한 경우에 어떠한 권한을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저작물의 영상화는 통상적으로 각색이 수반되므로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각색권을 영상제작자가 가짐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기존저작물의 저작자와 영상제작자 사이에 체결한 영상화권의 성격(배타적인지 또는 비배타적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고 영상저작물의 번역물과 기타 개작물 등의 이용방법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영상화의 횟수에 대하여도 침묵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독일의 저작권법은 제88조제1항에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영상화를 타인에게 허락한 경우에 의심스러운 때에는 그 허락에는 …… 당해 영상저작물 및 번역물과 기타 영상적인 개작물을 알려진 모든 이용방식으로 이용하는 배타적 권리의 부여를 포함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화계약에는 특약이 없는 한 재영상화권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존저작물의 저작자는 영상화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자신의 저작물을 다시 영상화를 허락할 수 있다.[32] 결국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각색에 대하여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명시하고 그 보호기간을 제74조제2항에서 5년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나, 영상화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부여・영상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방법의 허용 및 영상화기간 내에 재영상화에 대한 규정을 흠결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

31) 저작권법 제75조제2항

32) 독일의 저작권법 제88조제2항

⑵ 근대적 저작자와의 권리관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근대적 저작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근대적 저작자란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는 자로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저작자로서의 활동을 한 자를 말한다.[33] 따라서 보통은 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등을 말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들이 언제나 근대적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기존저작물의 각색 등을 통하여 영상물을 창작한 자인데, 영상저작물의 참여자 중 과연 누구를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상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영상저작물의 창작에 전체적으로 기여를 한 자이고 저작자의 결정은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 결정된다.[34]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그렇지만 영상제작자나 다른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가지는 권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즉 근대적 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사이에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을 약정한 경우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이용할 권리에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다.[35]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실상 영상제작자가 가지게 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89조제1항에서 『영상물의 제작에 있어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당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때에는 영상저작물 및 번역물, 기타 영상적 개작물 혹은 변형물을 이미 알려진 모든 이용방법으로서 이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 제76조제1항은 영상저작물에 한정하고 있고 또 이용방법에 대하여 침묵

33)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소개는 황적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계간 저작권(1988. 봄호), 20-23면 참조.

34) 일본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서 영화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영화저작물에 있어 번안되거나 복제된 소설, 각본, 음악 그 밖의 저작물의 저작자를 제외하고, 제작·감독·연출·촬영·미술 등을 담당해 그 영화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의 저작권법 제16조 참조).

35) 저작권법 제76조제1항

하고 있다라는 점과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특이하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법 제76조제1항은 영상저작물 이외에 번역물 및 기타 개작물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용방법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또한 추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가진다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⑶ 실연자와의 권리관계

실연자라 함은 영상물에 출연하여 연기·무용·가창·연술 등을 행한 저작인접권자를 의미한다. 통상의 경우 영상제작자와 실연자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실연에 대하여 영상제작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영상제작자와 약정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실연방송권 및 전송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36] 이 경우 영상제작자는 이들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37] 과연 이와 같은 법조항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영상제작자가 실연자의 실연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포괄적으로 가지는 것이고, 이를 제한하는 듯한 저작권법 제75조제3항은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법 제75조제3항의 권리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실연자의 실연이용에 관련된 조항으로 독일의 저작권법을 정확히 모방했어야 하는 것으로 입법상의 과오에 해당된다.

한편, 실연자의 실연과 관련하여 실연자가 가지는 실연을 이용하는 권한에 대하여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아무런 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독일의 저작권법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는 약정을 한 경우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실연에 대한 녹화권, 복제·배포권, 공중전달권 및 방송권을 가진다. 또 영상저작물의 제작시 만들어지는 사진 또는 사진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하여 영상제작자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느냐가 문제되는데,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침묵하고 있다. 독일의 저작권법은 영상제작자가 사진이나 사진저작물을 이용

36) 저작권법 제75조제3항 참조
37) 저작권법 제76조제2항 참조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38] 결국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이용권은 독일의 저작권법처럼 실연에 대한 복제·배포권, 공중전달권 및 방송권 등이 실연자에게 있음을 분명히하고, 영상제작시에 발생하는 사진이나 사진저작물의 이용권은 영상제작자가 가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영상제작자의 보호

(1) 영상저작물의 이용권

영상제작자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39] 통상의 경우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 해당되지만,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반드시 동일인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계약에 의하여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지만 그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문제된다.[40]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제74조제1항에서 영상화에 따른 이용허락에 영상저작물의 이용권한(각색, 공개상영, 방송, 전송, 복제·배포 및 같은 방법의 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에 수록되어 있는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을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41]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 제74조제1항에서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다면 아래와 같

38) 독일의 저작권법 제89조제4항

39) 저작권법 제2조제11호

40) 서울지법은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의 사이에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연자는 연기만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편집 등의 다른 제작 과정은 그 영상제작자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이를 복제·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영상제작자에게 편집 권한을 1회로 제한하여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실연자는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을 복제·판매할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그 실연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실연이 수록된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한을 양수한 자들로서도 그 실연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그 실연을 재편집하여 재편집 원반을 제작한 것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서울지법 1997. 2. 14. [95가합77875]).

41) 독일의 저작권법 제94조제1항

은 권리를 포함하여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는데,[4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은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이라고 하여 영상제작자에게 각색을 허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영상저작물의 제작에서는 기존저작물의 각색이 이루질 수밖에 없어서 영상화계약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기존저작물을 각색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저작권법도 제88조제1항에서 『변경함이 없이 또는 수정 내지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여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당연히 각색을 포함한다.[43]

둘째, 저작권법은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이라고 하여 영상제작자에게 공개상영을 허용한다. 여기서 공개상영이란 극장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상저작물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존저작물을 각색하여 창작된 영상저작물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영이 된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영상화계약에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저작권법 제74조제1항제2호가 공개상영권을 명문화한 것에 해당된다.

셋째, 저작권법은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이라고 하여 영상제작자에게 방송권을 허용한다.[44] 여기서 방송권이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나,[45] 주의할 것은 방송의 경우는 당초부터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의 방송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에 방송목적으로 영상화의 허락을 한

---

42) 저작권법 제74조 참조

43) 독일의 저작권법 제88조제1항제1호

44) 우리 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도 포함된다』고 보았다(대판 2003. 3. 25, [2002다66946]).

45) 저작권법 제18조

영상저작물이 방송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처음부터 방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영상화의 허락에 의하여 제작된 영상저작물을 방송할 수는 없다.

넷째, 저작권법은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이라고 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전송을 허용한다. 여기서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6] 따라서 영상제작자의 경우 영상저작물을 방송외의 전기적 방법을 이용하여 배포할 수 있다.

다섯째, 저작권법은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이라고 하여 영상저작물의 복제·배포를 영상제작자에게 허용한다. 여기서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47] 영상저작물의 복제·배포는 극장용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경우 극장에 배포하기 위한 복제는 허용되고, 방송용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경우 방송을 위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상저작물이 극장용으로만 제작되거나 방송용으로만 제작되는 경우에 전자를 방송하거나, 또는 후자를 극장에 상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48]

여섯째, 저작권법은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번역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인정한다. 즉 영상저작물은 국내적인 이용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용도 성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영상저작물의 국외수출 또는 외국 영상저작물의 국내적 이용에 있어서 원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영상저작물에 더빙하거나 자막을 삽입하여 원래의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49]

---

46) 저작권법 제2조 9의2

47) 저작권법 제2조제15호

48) 대법원의 판례도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판 1997. 6. 10. [96도2856]).

이상과 같은 영상화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승낙의 추정방식은 실질적으로 영상화에 따른 개별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방식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추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에 개별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⑵ 영상저작물 이용권의 보호기간

일반적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따라서 일반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영상저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50] 우리 나라 저작권법의 경우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51]

⑶ 영상저작물의 축약 및 양도 등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영상제작자가 가지는 영상저작물의 변형이나 축약에 대한 권한 및 이들 권한의 양도성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제75조제3항에서 영상제작자가 근대적 저작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영상저작물의 복제권, 실연방송권 및 전송권)는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독일의 경우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한 배타적 이용권을 가지고, 또한 영상제작자는

---

49) 저작권법 제75조제1항제5호 참조

50) 베른협약에서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하고 있는데,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한 때로부터 50년 또는 제작된 날로부터 50년 후에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베른협약 제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독일의 저작권법은 제94조제3항에서 「위 권리는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이 발행된 후 50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는데, 공개재현을 위하여 허락을 얻은 최초이용이 발행이전에 행해졌다면 그 이용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바, 위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이 당해 기간내에 발행되거나 허락을 얻어 공개재현되도록 이용되지 않는다면 제작후 50년이 지나면 위 권리는 이미 소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을 경과하기 까지의 사이에 존속한다(일본의 저작권법 제54조제1항),

51) 저작권법 제38조의2

그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에 관하여 가지는 영상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의 각 변형 또는 축약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52] 이 경우 해당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며, 영상제작자는 자신에게 유보된 이용방법에서 개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타인에게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53] 결국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에서도 영상제작자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변형이나 축약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그 양도성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명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왜곡에 대한 보호 및 성명표시

영상저작물의 중대한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에 영상저작자와 실연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중대한 왜곡이나 축약에 대하여 영상저작자나 실연자 등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된 것이 저작권법 제13조의 저작권자가 가지는 동일성유지권[54]인데, 저작권법에서 영상저작물의 고전적 저작권자, 근대적 저작권자 및 실연자가 가지는 동일성유지권을 포괄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결국 영상저작물의 중대한 왜곡이나 축약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한 제한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저작자에 한정된다. 우리 나라의 판례 중에는 “TV방영판권 양수인이 영화제작자(영화감독)의 동의 없이 극영화의 장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극영화에 포함되어 있던 한글 자막이 없이 TV로 방송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도 있다.[55] 이에 비하여 독일의 저작권법 경우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그 제작을 위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 그리고 인접보호권자로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는 자와 자신의 급부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된 자는 당해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에 관하

52) 독일의 저작권법 제94조제1항
53) 독일의 저작권법 제94조제2항
54) 여기서 동일성유지권이란 함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데, 영상저작물의 축약 등을 함에 있어서 동일성이 침해되었느냐의 여부는 그 영상저작물의 제작의도, 목적과 기존저작물의 형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5) 대판 2002. 3. 15. [2001다72272]

여 그들의 저작물 혹은 급부가 중대하게 왜곡되거나 기타 중대하게 침해된 것만을 금지할 수 있다.[56]

한편, 영상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한 실연자가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느냐도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침묵하고 있다. 독일의 저작권법은 형평에 어긋난 비용이 든다면 영상물의 제작에 협력한 실연자의 표시는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통상의 경우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인정한다[57]. 따라서 독일의 저작권법처럼 명시적인 조항을 통하여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물론 저작권법 제12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영상저작물의 실연자에게 유추 적용함에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상저작물의 특수성은 그 제작에 다수의 자가 관여하고 엄청난 비용 등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석과 그 보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고전적 저작자, 근대적 저작자, 영상제작자 및 실연자가 저작물의 영상화 및 영상저작물의 귀속 등에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보충(내지는 보완)을 위하여 '제3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입법개선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저작물의 제작자와 영상제작자사이에 영상화의 이용허락에 대한 성격(배타적인지 또는 비배타적인지)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를 배타적 이용허락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영상저작물과 그 개작물 등에 대한 이용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특약이 없는 한 영상화기간 내에서 재영상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저작권법 제76조제1항에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 이외에 번역물 및 기타 개작물 등을 이용할 포괄적인 이용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나, 저작권법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과 제3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정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하는 권리 등을 가지는

56) 독일의 저작권법 제93조제1항
57) 독일의 저작권법 제93조제2항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영상제작자는 실연자의 실연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포괄적으로 가지는 것이고, 이를 제한하는 듯한 저작권법 제75조제3항은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에 대한 이용권한을 가지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또한 영상제작자가 영상제작시에 발생하는 사진이나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저작권법은 영상제작자가 가지는 영상저작물의 변형이나 축약에 대한 권한 및 이들 권한의 양도성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입법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고전적 저작자, 실연자 등의 성명표시권 및 중대한 왜곡의 금지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데, 영상저작물의 독립성을 인정하므로 이들 권한을 명시하는 관련조항이 요구된다.

주제어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라이선스, 계약

Special Cases for Cinematographic Work Contracts in the Copyright Act

Hyeon, Dae-Ho*

The Copyright Act has special provisions governing cinematographic works in Chapter III to help supplement the contents of contracts concluded among the persons who take part in producing cinematographic works, but still requires legislative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 where the author of a work licenses a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s to use his work by means of cinematization, it is not clear whether the right to use such work is exclusive or non-exclusive. Judging from the general character of cinematographic works, it should be construed to be an exclusive right. Accordingly, the Copyright Act needs to be amended to specify such fact. Also, it is required that the said Act stipulate such rights to use in a more comprehensive way, not by means of enumeration.

Secondly, the Copyright Act should be amended to make clear the rights of the performers (the right to indicate their names and the right to demand the suspension of serious distortion) who participate in producing cinematographic works.

Thirdly, the Copyright Act needs to establish the prohibition of any distorted or curtailed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which might infringe on the reasonable interests of the producers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Lastly, the Copyright Act should be revised to specify the authorization of the authors of works, the producers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owners of neighboring copyrights to prevent any serious distortion or other grave infringement of the works, etc. concerned.

KEY WORDS Copyright Act, cinematographic works, license, contracts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h. D. in law